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31
----------	-----

2024. 7. 15.(월)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4년 7월 3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7월 3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7월 15일

-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방무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사유

- 각종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합리성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청년 위원 정의 신설(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8조)
  - 위원회 위촉직 위원 공개모집 규정 신설(안 제8조제2항~제3항)
    -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공개모집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함
  - 청년위원 의무 위촉 조항 신설(안 제8조제8항)
    -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 10% 의무 위촉하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 제외 또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경우 청년위원 30% 이상 위촉
  - 지역인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인재 위촉 규정 신설(안 제8조제9항)
  - 직무윤리 사전진단제도 신설(안 제8조제10항)
- 위원회 운영현황 도 홈페이지 공개 조항 신설(안 제18조제2항)

## 3. 검토보고 요지

### 가. 제출배경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sup>1)</sup>에 근거하여 2024년 1월에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의 전문성·윤리성 제고, 위원회 운영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관련 조례, 지침, 내부 규정 등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광역지방자치단체) 〉

구분	조치사항	비고
위원 구성의 전문성·윤리성 제고	- 위원 추천 다양화 및 검증절차 강화	
위원회 운영 공정성 강화	- 위원회 운영 투명성 확보 - 청년 등 미래세대의 참여 확대 - 지역인재 참여 확대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현행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8조제2항은 위촉직 위원의 공개모집 인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내부나 민간단체 위주의 위원 추천은 협소한 인재풀, 정실주의로 인해 다양성과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위원이 추천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 추천 과정의 공정성 제고와 유능한 인재 발굴을 위한 공개모집 추진을 권고한 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을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공개모집으로 위촉한다는 본 조항 신설은 타당한 조치라 보여짐.
- 안 제8조제8항은 청년위원 의무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청년세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가 주로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로 한정되어 의사표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각종 위원회에 청년세대가 일정비율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한 바, 「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를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는 본 조항 신설은 타당함.

- 안 제8조제9항 지역인재 위촉 규정 신설은, 각종 위원회에 지역인재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인재 우선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라는 국민권의 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조치로 타당함.
- 안 제8조제10항은 직무윤리 사전진단제도를 신설함.
  - 직무윤리 사전진단제도는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여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조치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 및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보여짐.
- 안 제18조제2항은 위원회 운영현황 도 홈페이지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운영현황 공개는 필요한 조치라 보여짐.
  - 다만, 공개내용, 공개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 위원회별로 공개하는 내용이 다르거나 형식적 공개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 공개에 관한 별도 규정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 종합 검토의견

-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의결 등을 위한 합의제 기관인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간위원 위촉과 신뢰성 확보 조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년”이란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제8조제2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을 “도지사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은 미리 선정인원, 자격요건, 선정기준 등을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자격기준에 합당한 응모자가 없는 경우

2. 긴급한 안전 처리를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전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⑧ 도지사는 위원회(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충청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충청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로 지정된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⑨ 도지사는 지역인재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인재를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⑩ 도지사는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 “통·폐합”을 “통폐합”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위원회 운영 등 보고)”를“(위원회 운영 등 보고 및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현황 등을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lt;신설&gt;</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청년”이란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lt;신설&gt;</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은 미리 선정인원, 자격요건, 선정기준 등을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p>
<p>&lt;신설&gt;</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p> <p>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p>



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충청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로 지정된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⑨ 도지사는 지역인재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인재를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⑩ 도지사는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⑪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6조(위원회 활동 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신 설>

<신 설>

③ ~ ⑤ (생략)

⑥ (생략)

제16조(위원회 활동 점검 등)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1. (생략)

2.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  
에 관한 사항

3. ~ 5. (생략)

제18조(위원회 운영 등 보고) (생략)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 통폐합 -----  
-----

3. ~ 5.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원회 운영 등 보고 및  
공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

②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현황  
등을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발취

### □ 지방자치법

-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양성평등기본법

-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 □ 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원회(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 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 조정위원회(이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무총리 또는 시·도지사가 각각 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3. 9. 12.>

1.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2. 외교·국방·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
3. 인사·감사·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성격·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정위원회
2.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위원회

나.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 9. 12.>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10분의 3 이상
2.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 1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무총리 또는 시·도지사가 각각 정하는 비율
3. 그 밖의 위원회: 10분의 1 이상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 사 유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현행조례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합리성 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 작성자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정선미